



의 안 번 호	제66호
회 의 연 월 일	2024. 4. 15. (제 536회 정기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
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(행정안전부령)

제 출 부 서	경 찰 청 (생활안전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4. 4. 1.

실종정책계장, 청소년보호과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 이유
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575호, 2024. 1. 16. 공포, 2024. 7. 17. 시행)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조항 삭제(안 제10조)

나.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관련 서식 수정·삭제(안 별지 제9호·제12호·제14호 서식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령안

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폐기 대장에,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”을 “폐기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2) 중 “때,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때”를 “때”로 하고, 같은 서식 3)을 삭제하며, 같은 서식 4) 및 5)를 각각 3) 및 4)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) ① (생 략) ② <u>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</u> <u>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</u> <u>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</u> <u>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유</u> <u>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</u> <u>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</u> <u>출하여야 한다.</u>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전 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<u>폐기</u> <u>대장에, 유전정보의 보존기간</u> <u>연장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4</u> <u>호서식의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</u> <u>장 대장에 기록하고, 10년간 보</u> <u>관하여야 한다.</u> ④ (생 략)	제10조(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폐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생활안전교통국	
연 락 처	(02) 3150 - 1394